

# 준수사항

## 1. 시설물 설치

- 가. 시설물 설치는 당일 설치, 당일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설치,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. 불가피하게 설치기간을 초과할 경우,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나. 시설물은 허가 받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,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.
- 다.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.
- 라. 시설물 설치 작업시에는 안전요원 배치, 안전 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, 작업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서 민·형사상 책임을 지며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.
- 마. 설치한 시설물이 바람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통행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바. 운현궁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을 가미한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## 2. 행사장 관리

### 가. 안전관리

- ① 행사시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행사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인적, 물적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③ 3,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운현궁 내에서는 종이 꽃가루, 풍선날리기 같은 효과 연출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.

### 나. 시설물 관리

- ① 운현궁 내 시설물은 훼손하거나,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② 폭죽, 불꽃놀이, 풍선 날리기, 종이 꽃가루 행사 등 효과연출용 물품은 사용을 금지한다.

#### 다. 기초질서 유지

- ① 운현궁 내에서는 음식물 취사행위를 금지한다.
- ② 운현궁 내에서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, 주차장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 하여야 한다.
- ③ 행사시 잡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운현궁 질서와 청결유지에 노력한다.

#### 라. 행사장 정리

- ① 행사 중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고 처리할 전담요원을 배치한다.
- ② 행사 종료후 즉시 청소 등 운현궁을 정리하여야 한다.
- ③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.

### 3. 기 타

가. 운현궁 내에서는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, 각종 모금행위, 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.

나. 타 법령에 의하여 신고 및 허가 대상의 사유가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.

다. 운현궁 사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 및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,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다.

라. 운현궁 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인은 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운현궁 주변 및 일반 시민이 소음 및 각종 제반사고 등의 피해를 입어 손해 및 손실보상 청구시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※ 운현궁 사용 허가는 장소만 사용토록 하는 것이며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.